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2335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23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2. 10 선고 2003나4718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로 담당변호사 임BA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신CA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C 담당변호사 여BB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0. 선고 2003나4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KK은행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CA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이하 '관리기관 주택은행'이라 한다)와 관리기관 주택은행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주택수요자 등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본래의 주택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이하 '금융기관 주택은행'이라 한다)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실, 1998. 5. 25. 주거안정법의 개정으로 주택금융신CA기금의 관리기관이 피고로 변경되자, 피고는 개정 주거안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1999. 1. 1.자로 관리기관 주택은행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주식회사 주택은행은 2001. 11. 1. 원고 은행으로 합병된 사실, 관리기관 주택은행은 1997. 6. 4.(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1996. 6. 4.은 오기로 보인다.) 주식회사 DA주택(이하 'DA주택'이라 한다)에게 보증한도 8억 5,740만 원, 보증기한 대출취급 후 9월(1998. 3. 4.)로 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금융기관 주택은행은 같은 날 신용보증을 담보로 DA주택에 8억 5,740만 원을 이자 연 3%, 지연이자 연 8.5%, 변제기 1998. 3. 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DA주택은 1997. 7. 4.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 중 나머지 4억 2,87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7. 5.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던 중 1997. 7. 26.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금융기관 주택은행은 1999. 6. 3.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이하 '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 3월이 경과한 때'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기관 주택은행과 DA주택이 대출 당시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여신거래약관'이라 한다)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이라고만 규정할 뿐이어서 위 문언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에서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 약관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DA주택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 여신거래약관에 의하여 이미 금융기관 주택은행에 대하여 당해 대출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오로지 신용보증약관과 관련해서만 금융기관 주택은행의 별도의 기한이익 상실조치가 없는 한 당해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며, 관리기관 주택은행이 당시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불량거래처에 해당되어도 곧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주택은행의 기한의 이익 상실조치가 있을 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실무를 운영한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채무자가 다른 어떤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도 오로지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조치를 하여야만 약관조항의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여신거래약관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조항과, 일정한 사유 외에 채권자의 서면통지 또는 통보가 있어야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최고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조항을 구별하여 두고 있으므로 여신거래약관상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로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운영형태와 모순되지 않으며, 여신거래약관과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및 이로 인한 보증인의 면책 여부가 그 문언에 비추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금융기관 주택은행이나 이를 승계한 원고의 당해 대출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에 관한 운영형태만을 들어 오로지 채권자의 일방적 행위인 기한이익 상실조치 유무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및 보증인의 면책 여부가 변동된다고 하는 것은 보증인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전제한 후, DA주택은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1997. 7. 26. 금융기관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금융기관 주택은행은 이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인 1997. 10. 26.부터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1년에 이르는 1998. 10. 26.까지만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위 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9. 6. 3.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이미 면책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금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용보증약관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 3월이 경과한 때'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시한은 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이며, 위 기한까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이 전액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 내지 시기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신용보증약관을 작성한 관리기관 주택은행의 1995년도 주택금융신CA기금 실무교본, 1995. 12.경 발간된 주택금융신CA기금 상담사례집, 1998. 7.경 발간된 보증업무 처리요령에는 여신거래약관상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사유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사유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으로 설명하면서, 기금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사유인 '기한의 이익 상실'의 운용은 채권자 은행이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태 등을 검토하여 채권회수가 불투명할 경우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인 금융기관 주택은행도 관리기관 주택은행의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관의 해석·운용지침에 따라 여신거래약관상 당연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규정된 경우에도 통지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일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고, 관리기관 주택은행도 이를 기준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계약당사자인

관리기관 주택은행과 금융기관 주택은행은 신용보증약관상 보증채무 이행청구사유 내지

이행청구시한의 기산점인 '기한이익 상실'은 여신거래약관상의 기한이익 상실과는 달리 실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의 통지를 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용보증약관상의 기한이익 상실과 여신거래약관상의 기한이익 상실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용보증약관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